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등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3.

(재)세종연구원장

구분	일반 이용권	노인 이용권	A디지털 이용권*	장애인 이용권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수혜자 신청 가능)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30세 이상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 장애인
지원인원	579명 내외	55명 내외	70명 내외	57명 내외
사용기관	일반 사용기관	일반 사용기관	디지털 사용기관*	일반 사용기관
	*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AI·디지털 사용기관에서만 결제 가능 ※ (사용기관 목록) 세종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reg/sejong) 내 「사용기관 안내」 확인			
신청기간	2026.4.13.(월) 10:00 ~ 2026.4.30.(목) 17:00 ※ 선정일 5월 중순 예정			
신청방법	인터넷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lllcard.kr/sejong)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 (www.gov.kr)
	방문	세종시청 6층 교육지원과 세종연구원 (세종 한누리대로 2281, 5층)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성인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1인당 연 35만원			
사용카드	NH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사용기간	이용권포인트 충전일 ~ 2026. 10. 31.(토)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사용방법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카드 결제(온·오프라인 가능)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사용가능 기관 목록 확인			

1. 지원개요

- (지원유형)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성인 중 아래 대상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	신청대상*	지원인원
일반(지역특화) 이용권 1차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7.12.31.까지 출생한 자)	579명 내외
노인 이용권 1차	65세 이상 (1961.12.31.까지 출생한 자)	55명 내외
AI·디지털 이용권 1차	30세 이상 (1996.12.31.까지 출생한 자)	70명 내외
장애인 이용권 1차	19세 이상 성인 중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2007.12.31.까지 출생한 자)	57명 내외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 연도별 신청·지원 가능한 이용권은 1개이며, **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선정 불가**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유무선 전자·통신기기, 전자교재(PDF, e-book) 등 사용 불가

※ 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사용 관련 사항 확인 필수【붙임 3】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 결제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ilcard.kr)-[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

- 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②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①컴퓨터 교습과정* 운영학원 및 ②원격학원
 - * 컴퓨터, 게임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 ③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6년 4월 13일(월) 10:00 ~ ‘26년 4월 30일(목)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하며,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누리집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 신청내역]에서 신청완료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비고
일반·노인·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세종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lllcard.kr/sejong)	① 세종시청 6층 교육지원과 ② 세종연구원 ※ 한누리대로 2281, 5층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확인 ※ [붙임1] 신청 서류 참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정부24 혜택알리미 (www.gov.kr)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절차 필수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붙임 1】 참고 및 하단 서류 구비하여 제출

○ (제출서류)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 【붙임 1~2】 참조

○ (문의처) 전화,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문의 가능

-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일반·노인·AI·디지털 ☎1600-3005 / 장애인 ☎1668-0420)

- 세종시청 (민원콜센터 ☎044-120 / 교육지원과 ☎044-300-3923)

- 세종연구원 (일반·노인·AI·디지털 ☎044-865-9653, 9686 / 장애인 ☎044-865-9690)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1:1 문의 가능(세종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로그인-[온라인 상담])

※ ‘평생교육이용권_중앙 상담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1:1 채팅 상담 및 챗봇 이용 가능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신청자 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보연계를 통한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이용자 선정원칙 》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우선 선발
- ②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 (추첨방법) 이용권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 (선정자 발표) ' 26년 5월 중순(예정) ※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통지* 및 누리집** 확인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카카오 알림톡)
 - ** 세종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이용권 선정결과]에서 선정결과 확인 및 선정통지서 출력
 -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 수신거부, 수신 불가 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4. 이의신청

- (신청개요)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기간) 선정결과 통보일 ~ 30일 이내
- (신청방법) 이용권 누리집에서(www.lllcard.kr/sejong) 양식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shlee@sri.re.kr)로 제출
- (처리방법)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후 10일 이내 인용여부 결정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선정포기

- (신청개요)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포기 가능
- (신청기간) 선정결과 통보일 ~ 10일 이내
 - ※ 선정포기 없이 평생교육이용권 미사용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일반, 노인,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 누리집 접속-로그인-[평생교육이용권]-[선정포기 신청]

- (장애인) 이메일 제출(yoonmint@sri.re.kr)

○ (처리방법) 선정포기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처리

※ 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이력이 확인될 경우 선정포기 불가

6.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카드) NH농협채움카드(체크, 신용) ※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사용 불가

《 사용 가능 카드 확인 》

① NH농협카드 누리집 접속-[카드-카드신청/발급-카드찾기]-**체크카드, 신용카드 목록 확인**



② **체크카드, 신용카드 목록에서 '채움(채움)'** 로고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신용카드 발급 시 별도 연회비 발생 주의

○ (카드발급)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기존 NH농협채움카드 소지자는 지원금 충전시 문자로 개별 알림(추가 발급 필요 없음).

NH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사용 가능 카드 확인>을 참고하여 카드발급

※ NH농협카드(비씨), 지역화폐카드, 가족카드, 기업카드, 보조금카드(ex. 문화누리카드 등), 일반특수목적카드, 면세유카드 등은 사용 불가

○ (카드발급 기간) 선정결과 통보일 ~ 1개월 이내

※ 기한 내 카드 신청 후 발급 완료해야 하며, 미발급시 이용권(지원금) 미부여(0원 처리).

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 재발급의 경우에도 기한 내 발급 필수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illcard.kr)-[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 AI-디지털 이용권은 AI-디지털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26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가맹번호가 등록된 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미등록 기관 또는 잘못된 결제 방법(할부거래 등)으로 결제 시 개인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사용기간) NH농협채움카드 한도 충전 후 ~ '26년 10월 31일(토)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이용권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시 발송되는 문자 내용 또는 누리집 접속 후 사용이력 확인하여 개인계좌 출금 여부 필히 확인

- 누리집 사용내역 조회: [농협카드 누리집]-[공공바우처]-[정부지원/바우처]-[이용내역 조회]

- 모바일 사용내역 조회: NHPAY 어플 실행-오른쪽 하단 [전체]-[정부지원사업]-[바우처]-[이용내역]-[잔여한도]

※ NH농협채움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용 가능 채움카드로 한도 내 결제 가능(문화누리카드 같은 공공/복지카드(보조금 카드) 사용 불가)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채움카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타 지원금이 우선 결제·차감될 수 있으니 사용이력 필히 확인

※ NH농협채움카드 발급 및 결제 오류 관련 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7.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추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① 세종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 등록, ② 세종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로그인-[알림소통]-[온라인 상담]으로 변경 내용 알림(이용권 결제 알림 수신용, NH농협)

- 평생교육이용권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이용권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 이용권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

- 붙임 1.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및 신청 서류 안내 1부
2.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서류 1부
3. 부정사용 행위기준 및 처리방안 1부

붙임 1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및 신청 서류 안내

이용권 유형	구분	제출서류	신청방법		비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내 입력)	방문신청		
일반·노인·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필수	서식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	※ 온라인 신청 시 대리 신청 불가
		서식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서식④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약 동의서	○	○	
		-	신분증 사본	○	○	
	선택	서식⑤	학습계획서(선택)	○	○	
	대리 신청시	서식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필수	서식②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서식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서식④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약 동의서	○	○	
		-	신분증 사본	○	○	
		-	장애인등록증 사본	○	○	
	대리 신청시	서식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자료를 통한 이용권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②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붙임 2**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양식****【서식 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이용권유형 []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19세 이상 성인) [] 노인 평생교육이용권(65세 이상 노인) []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30세 이상 성인)	신청 차수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차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담당자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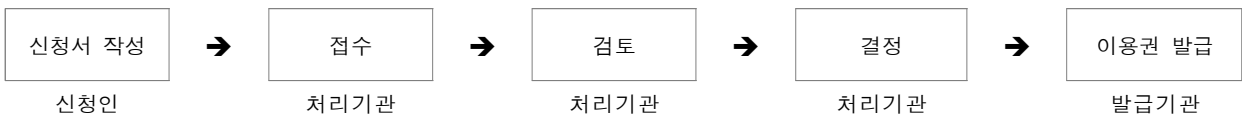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서식 ②】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	-----	------	--------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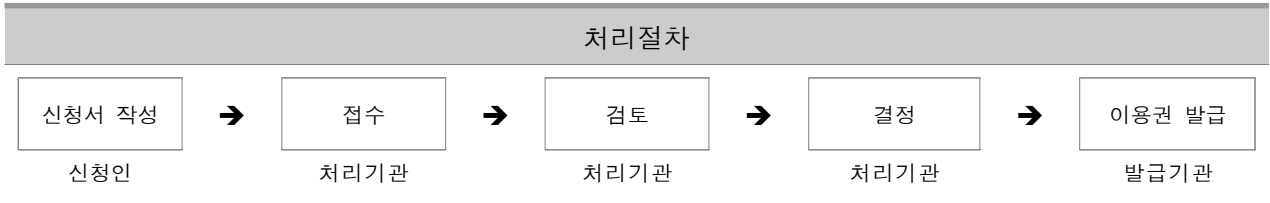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회원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NH농협카드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가입자명, 가입구분, 가구원 수, 고지금액)	목적달성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④】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관련 확약	본인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공고를 고지받았으며, 필수적인 서류 누락 및 오제출, 공고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에 확약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45조의3(벌칙),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이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
2. 2026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한 강좌 수강 없이 교재 단독 구매 불가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이용권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재료비 사용 불가)
3.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때,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에 따른 환불은 'NH농협은행 채움카드'의 결제 취소로 가능하며,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현금 환불 불가)

본인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해당 사항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에 확약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⑤】 학습계획서(선택)

【학습계획서】

■ 수강 예정 과정

평생교육 이용권을 활용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 1) 학력 취득 목적 교육
(학력 취득 목적의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받고자 참여하는 교육을 뜻함)
- 2) 학력 취득 목적 외 교육
(학력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 직업, 교양, 취미, 여가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을 뜻함)

■ 수강 과정의 내용

평생교육 이용권을 활용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은 어떤 내용인지 선택해 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 1) 학력 취득 목적 교육을 선택한 경우(1개 항목 선택 가능)

- 1-1)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과정(예: 초·중등 졸업 학력인정 교육 등)
- 1-2) 대학교 졸업 학력(인정)과정(예: 학점은행제 등)
- 1-3) 기타()

☞ 2) 학력 취득 목적 외 교육을 선택한 경우(중복 선택 가능)

- 2-1) 성인문자해득교육(문자해득 교육, 기초생활기술 교육, 기타 문해교육)
- 2-2) 직업능력 향상교육(직업준비교육, 자격인증교육, 현직직무역량 향상교육)
- 2-3)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진로 관련 교육)
- 2-4) 인문교양교육(건강심성, 기능적 소양, 인문학적 교양교육)
- 2-5) 문화예술교육(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향상 교육)
- 2-6) 시민참여교육(시민책무성, 시민리더역량, 시민참여활동 교육)
- 2-7) 기타()

☞ 구체적으로 수강 예정 강좌가 있을 경우, 강좌명을 적어주세요.

■ 수강 목적

평생교육 이용권을 활용하여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1)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 2)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 3) 공부하는 자체가 즐거워서
- 4)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하여
- 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 6) 기타()

■ **수강 시작 시기**

평생교육 이용권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1개 항목 선택 가능)

- 1) 이용권 이용자로 선정 후 1개월 이내
- 2) 이용권 이용자로 선정 후 1개월~2개월 이내
- 3) 이용권 이용자로 선정 후 2개월~3개월 이내
- 4) 기타()

☞ 구체적으로 수강 시기를 결정하신 경우, 수강 시작 날짜(또는 월)를 적어주세요.

■ **교육 기관**

평생교육 이용권을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시고자 합니까?(중복 선택 가능)

- 1) 초·중등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 2) 대학교(원)부설 평생교육기관
- 3) 원격교육형태(인터넷 강의 등) 평생교육기관
- 4) 사업장(문화센터, 산업체, 백화점 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 5)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기관
- 6) 언론기관(신문, 방송)부설 평생교육기관
- 7) 지식·인력개발형태
(직장, 연수원,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으로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
- 8)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포함)
- 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10) 기타()

■ **학습 결과 활용 계획**

평생교육 이용권을 활용하여 학습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1) 학교 진학 또는 학위 취득
- 2) 취업, 이직, 창업에 활용
- 3) 자격증 취득
- 4) 자원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적 활동 참여
- 5) 친목 도모 증진
- 6) 건강 관리
- 7) 기타()

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인은 위와 같이 「학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 학습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서식 ⑥】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서명 또는 인)</div>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이용권 부정사용 유형 >

- 이용권 또는 이용권을 통한 서비스를 가족 포함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의 행위
- 이용권 사용처 이외 기관 강좌 수강 및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구매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이용권 부정사용 처리기준 >

대상	유형	조치사항
이용권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권 카드 부정사용(양도·대여 등) ■ 이용권 담합·환불 등을 통한 현금화 ■ 이용권 목적 외 사용 (사용기관 수강료 및 해당하는 교재 이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권 사용 정지 또는 이용 제한 ■ 이용권 부정 사용액 환수
지원 미대상자 (제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타인의 정보 이용하여 발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처리
사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관 등록 범위 및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 타인 명의도용 이용권 신청 및 부정 사용 (신청인 본인의 요청 및 동의 없이 임의로 이용권 신청 또는 사용) ■ 사용처 이외 강좌 수강 및 목적 외 사용 (재료·물품 구매) 등 부정 사용 유도 ■ 서비스 비용 허위·과다 청구 ■ 이용권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권 부당 이득금액 반환 ■ 이용권 사용기관 운영중지 또는 등록취소 ■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처리

*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허위·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카드 양도·대여) 등
 ※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 기준 및 절차('23.08.25.)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